



교육감 규정

번호: A-101

제목: 모든 학생 대상 입학, 재입학, 전학 및 목록 공지

항목: 학생

발행: 2022년 2월 17일

변경 사항 개요

- NYC 학교 학군으로 복귀하는 아동 또는 법원에서 명령한 환경, 보호시설 및 치료 프로그램에서 복귀하는 아동들의 복귀 권리 변경(§§ III, III.A.1-3, III.C.1-2, III.D.1, VII.E.3).



교육감 규정

번호: A-101

제목: 모든 학생 대상 입학, 재입학, 전학 및 목록 공지

항목: 학생

발행: 2022년 2월 17일

목차

교육감 규정	1
변경 사항 개요.....	1
요약	3
I. 서론.....	3
II. 입학 및 등록 정책	9
III. 재입학.....	18
IV. 전학.....	19
V. 장애 학생의 입학 및 등록 정책.....	24
VI. 주거지 판별 & 증빙.....	25
VII. 특수 상황	29
VIII. 목록 공지	34
IX. 예외조항.....	35
X. 문의처.....	35



교육감 규정

번호: A-101

제목: 모든 학생 대상 입학, 재입학, 전학 및 목록 공지

항목: 학생

발행: 2022년 2월 17일

요약

본 규정은 2020년 3월 31일자 교육감 규정 A-101를 대체한다. 이 규정은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행정적 학군 1-32 및 특수 학교와 프로그램 학군 75 두 곳 모두에 재학중인 뉴욕시 학교 학군 소속 학생들의 입학, 퇴교 및 전학에 관한 정책을 명시합니다.

I. 서론

A. 학생 등록 담당실은 뉴욕시 학교 학군 내 1-32 학군 소속 모든 학교들의 입학전형 및 등록 정책과 계획에 대한 전적인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75 학군 및 79 학군 수퍼인텐던트는 각 소속 학군 내 모든 학교 및 프로그램의 입학전형 및 등록 정책과 계획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B. 정의:

본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입학전형**은 가정에서 다음 학년도에 등록할 학교 또는 프로그램에 배정받기 위해 선호하는 학교 또는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2. **교육청(DOE)** 뉴욕시 교육청을 의미합니다.
3. **교육청(DOE) 학교**는 1-32 학군 소속 학교 및 75 학군 소속 학교 프로그램을 포함한 뉴욕시 학교 학군 내 위치한 학교를 의미합니다.
4. **등록**은 배정받은 학교에 등록을 마치고 해당 학교에 실제로 다니는 학생을 해당 학교에서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학부모**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학생의 양육이나 보호를 책임진 기타 성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생물학적 또는 입양 부모, 의부모, 법으로 정한 보호자, 위탁 부모 및 "부모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부모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사망이나 투옥, 정신병, 다른 주에 거주, 또는 자녀 유기 등의 이유로 아동의 보호자 부재 시, 이 아동의 양육을 맡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6. **입시 등록**은 모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유효성 또는 학생의 해당 학교 등록 자격에 관한 상황에 의문이 있을 때 학교에서 어떤 학생을 시스템에 등록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7. **등록**은 학부모가 섹션 VII 에 제공된 경우 및 준비한 나이 증빙, 주소 증빙을 포함한 필수 서류에 따라 한 학교에 어떤 학생의 등록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 및 시스템에 해당 학생을 등록하여 학교 배정을 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8. **전학**은 섹션 IV 에 요약된 범주들의 하나에 따라, 한 학생이 현재 교육청 학교를 떠나 다른 교육청 학교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학하는 학생은 뉴욕시 학교 학군에서 퇴교 되지 않습니다.
9. **존 학교**는 "존"으로 정해진 특정 지역 내 거주하는 학생에게 첫 번째 우선권을 주는 학교를 의미합니다. 존 학교는 해당 학교의 기타 존 지원자보다 이 학교의 첫 번째 우선권을 받는 현재 해당 학교의 3-K 프로그램 등록되어 있는 pre-K 입학을 제외하고, 존이 아닌 지역의 학생을 교육하기 전에 이 학교의 존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존 학생들은 존 학교의 정원에 따라 등록 및 입학할 자격이 있습니다.

C. 학교 입학전형

1. 학생은 인종, 피부색, 신념, 출신 국가, 성별(성), 성 정체성, 임신, 이민, 시민권 상태, 장애, 성적지향, 종교, 몸무게 또는 민족에 따라 교육청 학교 입학 또는 등록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2. 입학하는 해에 세 번째 생일을 맞는 어린이는 3-K 프로그램에 입학할 자격이 있습니다(입학 우선권(섹션 II.B. 참고) 및 제공 가능한 정원에 따라).
3. 입학하는 해에 네 번째 생일을 맞는 어린이는 유아원("Pre-K") 프로그램에 입학할 자격이 있습니다(입학 우선권(섹션 II.C. 참고) 및 제공 가능한 정원에 따라).
4. 입학하는 해에 다섯 번째 생일을 맞는 어린이는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하는지 또는 다른 학교로부터 전입 여부에 관계 없이 다음과 같은 유치원 입학 요건 예외의 경우 외에는 반드시 교육청의 유치원으로 입학하여야 합니다:
 - a. 부모가 다음 학년도에 여섯 살로 1 학년에 바로 입학시키는 것을 선택한 경우

- b. 비-공립 학교에 등록하였거나 부모가 자녀를 교육청의 홈 스쿨링 담당실에 등록한 경우

입학하는 해에 여섯 번째 생일을 맞고 현재 교육청 학교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교육청의 홈 스쿨링 담당실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1 학년으로 입학하여야 합니다.

- 5. 어린이들은 상기 4a 또는 4b 의 문단에 정해진 바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5 세부터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학교 출석은 학생이 17 세가 되는 학년도의 마지막까지 필수적이며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이들 학생은 졸업 자격을 갖추었다 하여도 21 세가 되는 학년도 말까지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D. 학년 배정 정책

1. NYC 학교 학군에서는 유치원이 취학 첫 학년입니다. 역년에 5 세가 되는 어린이 만이 유치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역년에 6 세가 되는 어린이는 1 학년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학생의 나이에 따라 1 학년에 입학해야 하지만 학업적으로 다른 학년 배정이 적합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경우 학교장은 배정에 대해 수퍼인텐던트와 상담하고 학부모가 제출한 의료 또는 기타 평가 자료를 제공하여 예외적인 배정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퍼인텐던트는 해당 학생의 적절한 학년 레벨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3. NYC 학교 학군에서 처음으로 공부하게 된 학생은 등록 시점에 제출된 학생의 최종 학교 교육 기록에 따라 2-12 학년으로 배정될 것입니다.
4. NYC 학교 학군에서 처음으로 공부하게 되었으며 교육 기록이 없거나 교육 기록이 2 년 이상 된 학생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학년 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a. 학생은 나이에 따라 임시로 등록하게 될 것이며, 고등학교 학년 연령 대의 학생은 만약 학생이 해당 학년도 말(6 월 30 일 또는 그 이전) 전에 15 세가 된다면 9 학년으로 등록될 것입니다.
 - b. 학교장이 다른 학년이 교육적으로 더욱 적절한지에 관해 평가할 것입니다. 학교장은 수퍼인텐던트와 상담하고 추천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입니다. 수퍼인텐던트는 해당 학생의 적절한 학년 레벨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 c. 만약 학교장이 추가적인 또는 더욱 최근의 교육 기록을 받게 된다면, 학년 배정을 조정할 것입니다.
5. 뉴욕시 학교 학군을 퇴교했던 학생이 뉴욕시 학교 학군으로 돌아오면 교육 기록에 따라

학년 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학생이 뉴욕시 학교 학군을 퇴교했던 학년도에 다시 뉴욕시 학교 학군으로 돌아왔다면, 이 학생의 교육 기록이 다른 지역에서 마친 학년을 반영하고 해당 학생은 다음 학년도에 다음 학년으로 등록하게 될 것입니다.

E. 거주 요건

1. 섹션 VII.B 및 VII.C 에 제공된 예외적인 경우 외, 학생은 반드시 교육청 학교에 입학할 자격을 갖기 위해 뉴욕시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주요 거주지가 뉴욕시가 아닌 모든 학생은 교육감 규정 A-125 에 따라 뉴욕시 공립학교 등록이 고려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생 등록 담당실에 입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모든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 등록 시점에 주거 질문서(Housing Questionnaire)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구분된 모든 학생은 반드시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학생 프로그램에 추천되어야 합니다. [주거 질문서](#)는 [학부모 및 청소년을 위한 매키니-벤토법](#)과 함께 제공되며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유치원에서 12 학년 학생으로 뉴욕시 내에서 거주지가 변경된 학생들은 해당 학교의 최종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육감 규정 A-450 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 것 외에 징벌이나 학업 문제로 인해 존 학교나 거주하고 있는 학군으로 전학 되지 않을 것입니다.
4. 등록되어 있는 동안 NYC 내에서 거주지를 변경한 부모의 자녀로 새로운 주소가 존이 아닌 곳이거나 재학중인 학교의 거주 학군이 아닌 경우 부모는 출석 및 정시 등교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 학생은 교육감 규정 A-801 의 조항 외 노란색 스쿨 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에 기재되어 있는 특수 교통편 수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만약 출석률이 나빠지고 지각이 잦아진다면 학교에서는 반드시 가족과 함께, 정기적인 출석률을 높이고 지각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지원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 a. 그러나 만약 결석이 빈번 및/또는 지각이 계속되며 전학이 학생을 위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될 때, 학교장은 학생의 새로운 존에 위치한 학교 또는 학생의 새로운 주소지에 가까운 학교로 전학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반드시 보로 담당실의 연락 담당자 또는 75 학군의 경우 75 학군 담당실에 정기적인 출석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 및 학생 가족과 함께 기울인 노력에 대한 문서화된 서류뿐 아니라 학생의 잦은 결석 및/또는 지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로 담당실의 연락 담당자 또는 75 학군 담당실은 학생의 거주지가 변경되기 전후의 출석과 지각 기록을 비교한 기록뿐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의 출석 지원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한 기록을 검토할 것입니다.
 - b. 1-32 학군 학교: 보로 담당실의 연락 담당자가 출석 및 정시 등교가 더 나빠졌음을 확인하였다면, 패밀리 웰컴 센터 이규제큐티브 디렉터 또는

디렉터로부터 새로운 배정을 요청할 것입니다. 75 학군 프로그램: 75 학군 배정 담당실은 출석 및 정시 등교가 더 나빠졌음을 확인하고 새로운 75 학군 프로그램에 배정할 것입니다.

- c. 학교장은 반드시 학생이 전학을 가게 되었음을 학부모에게 알리는 통지문을 제공해야 합니다. 1-32 학군 학교: 보로 담당실 연락 담당자에게서 확인을 받은 후, 학생 등록 담당실은 학생의 전학을 실시하고 학생을 존 또는 배정된 학교나 기타 학생이 전학할 자격을 갖춘 적절한 학교에 배정할 것입니다. 75 학군 프로그램: 75 학군 담당실은 학부모에게 새로운 배정 공지를 보내고 학부모에게 등록하도록 조언을 할 것입니다.
- d. 임시 거주지 및 위탁 보호 학생들은 본 규정의 섹션 VII.B(임시 거주지 학생들에 관한 조항) 및 섹션 VII.C(위탁 보호 학생들에 관한 조항)에 제시된 것과 같이, 전학하는 것이 학생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전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 등록 정책

1. 학생이 교육청 학교에 등록 및 배정을 받기 위해, 학부모는 해당 학생이 독립한 미성년자이거나, 18 세 이상이거나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섹션 VII.A 참고)이 아니라면 반드시 방문하셔야 합니다.
 - a. 만약 학생을 등록하는 개인이 학부모가 아니라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부모가 아닌 보호자 공술서](#)를 작성하여 학교, 패밀리 웰컴 센터 또는 75 학군 프로그램에 제출하고 가능하다면 반드시 [학부모 공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독립한 미성년자, 18 세 이상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는 부모가 아닌 보호자 공술서 또는 학부모 공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섹션 VIII.D 참고).
 - b. 학생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자격에 관한 의문점이 있다면, 학교는 학생과 보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 대한 더욱 상세한 조사를 위해 학생의 등록을 유보하여야 합니다.
2. 방문한 사람이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것:
 - a. 주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섹션 VI 참고)
 - b. 출생증명서, 여권(외국 여권 포함), 세례 증명서(생년월일이 적힌 것) 등의 나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상기 서류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의 연령을 판단할 수 있는 다음과 서류 또는 기록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i. 운전면허증
 - ii. 주 또는 기타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IDNYC 카드 포함)

- iii. 생년월일이 적혀 있고 사진이 부착된 학교 신분증
 - iv. 영사관 발급 신분증
 - v. 병원 또는 의료기록
 - vi. 군인 피부양자 신분증
 - vii. 연방, 주, 또는 지방정부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예, 로컬 사회보장 서비스 기관, 연방 난민 정착 지원국)
 - viii. 법원 명령 또는 기타 법원에서 발급한 서류
 - ix.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등록증
 - x. 비영리 국제 원조 기관 또는 봉사단체 기록
- c. 학생의 예방접종 기록(있는 경우)
 - d. 학생의 최근 성적표/성적 증명서(가능한 경우)와 같은 교육 기록
3. 학부모가 다음과 같은 서류들의 충분한 증빙을 제시할 수 없다면, 이 학생은 반드시 임시로 등록접수하고 해당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a. 주소
 - b. 나이
 - c. 예방접종 기록
 - d. 교육 기록
4. 학교에 적절하게 등록하였거나 학생 등록 담당실, 75 학군 배정 담당실 또는 75 학군 프로그램 또는 해당되는 경우 유아원 특수교육 위원회에서 등록 또는 배정 받은 어떤 학생도 해당 학교 또는 프로그램에서 배정 및/또는 등록이 거부되지 않을 것입니다.
5. 학생의 등록 자격(예. 주소지, 형제자매 우선 순위 또는 특수 프로그램 추천 등)에 따라 어떤 학교에 등록한 경우, 해당 학생은 반드시 학교에 다니기 위해 등록 시점에 등록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학생의 등록 자격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학생 등록 담당실 또는 75 학군 배정 담당실에서는 해당 학생을 전학 보내고 해당 학생이 입학 자격을 갖춘 학교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G. 일반적인 정책 및 절차

1. 등록을 위해 학교, 프로그램 또는 패밀리 웰컴 센터에 방문한 유치원-12 학년 자격을 갖춘 모든 학생들에 대한 학교 배정 및 등록은 반드시 가능하다면 다음 학교 수업일까지

준비되어야 하며 반드시 학교 수업일 기준 5 일 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고등학교 입학전형 절차에 참가한 적이 없는 학생으로서, 1-32 학군 소속 고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패밀리 웰컴 센터를 방문하여 학교 배정 및 등록을 해야 합니다. 어떤 고등학교도(75 학군 프로그램, 79 학군 프로그램 및 거치 학교 제외) 학생을 등록시킬 수 없습니다.
3. 법에 따라, 학생에게 체류 신분을 밝힐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거나 제출하도록 할 수 없으며, 또한 체류 신분이나 체류 신분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학교 입학, 접수 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학생 또는 학부모의 체류 신분에 대한 내용은 어떤 학교 양식 및/또는 기록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4. 사회보장 기관이 보호하고 있거나, 청소년 감호 기관 및 교정 기관이 보호하고 있는 학생들은 섹션 III.D, VII.C, VII.E, 및 VII.F 에서 제시된 절차에 따라 학교에 등록될 것입니다.

II. 입학 및 등록 정책

모든 입학 및 등록 정책에 대한 내용은 임시 거주지 또는 위탁 보호 상황으로 인해 뉴욕시가 아닌 곳으로 이주하게 된 임시 거주지 또는 위탁가정 학생들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 정책은 섹션 VII.B 및 VII.C 를 참고하십시오.

A. 형제자매 우선권

1. 학교 배정 및 입학 우선권을 목적으로 확인된 형제자매는 학교 입학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학생의 이복/이부 형제자매, 의붓 형제자매 및/또는 위탁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동일한 가구에 거주하는
 - a.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해당 학교에 등록되어 있으며 다음 학년도에 그 학교에 지속적으로 등록하거나 또는
 - b. 지원한 학교와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75 학군 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2. 3-K, pre-K, 및 초등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입학전형 절차에서 입증된 형제자매가 있는 학생은 제공 가능한 정원에 따라 수혜자격을 충족한 경우 학교 및 프로그램에 대한 형제자매 우선권을 받게 됩니다.
3. 3-K 프로그램에 대한 입학전형 우선권의 목적으로 확인된 형제자매에는 pre-K 프로그램 또는 pre-K 센터에 등록한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Pre-K 센터는 일부 경우 3-K 를 비롯한 pre-K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청에서 관할 및 운영하는 학군-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4. 학교 및 프로그램은 입학 제안을 하기 전에 형제자매 상황에 대해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B. 1-32 학군 3-K 프로그램에 대한 입학 우선권

1. 3-K 프로그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학년도 12 월 31 일 이 까지 만 3 세가 되어야 합니다.
2. 지원자들은 정원이 남아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입학 우선권 순위에 따라 자신의 존 학교의 3-K 프로그램에 입학 허가를 받게 됩니다:
 - a. 확인된 형제자매가 있는 존 지원자
 - b. 확인된 형제자매가 없는 존 지원자
 - c. 확인된 형제자매가 있는 학군 내 지원자
 - d. 확인된 형제자매가 있는 학군 외 지원자
 - e. 학군 내 지원자
 - f. 학군 외 지원자
3. 지원자들은 정원이 남아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입학 우선권 순위에 따라 자신의 비-존 학교의 3-K 프로그램에 입학 허가를 받게 됩니다:
 - a. 확인된 형제자매가 있는 학군 내 지원자
 - b. 확인된 형제자매가 있는 학군 외 지원자
 - c. 학군 내 지원자
 - d. 학군 외 지원자
4. 지원자들은 정원이 남아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입학 우선권 순위에 따라 Pre-K 센터의 3-K 프로그램들에 입학하게 됩니다:
 - a. 확인된 형제자매가 있는 학군 내 지원자
 - b. 확인된 형제자매가 있는 학군 외 지원자
 - c. 학군 내 지원자
 - d. 학군 외 지원자
5. 각 3-K 프로그램 별로, 보다 다양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선발 기준에 그 밖의 우선권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선권은 조기 아동 교육부, 학생 등록 담당실 및 교육청 법률 자문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추가적인 입학 우선권이 있을 경우, 전형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각 가정에 통보될 것입니다.

C. 1-32 학군 Pre-K 프로그램에 대한 입학 우선권

1. 유아원 프로그램에 입학하기 위해서 어린이는 반드시 해당 학년도 12 월 31 일 이 까지 만 4 세가 되어야 합니다.

2. 지원자는 정원이 남아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입학 우선권 순위에 따라 자신의 존 학교의 pre-K 프로그램에 입학 허가를 받게 됩니다:
 - a. 현재 해당 학교의 3-K 프로그램에 등록된 지원자
 - b. 확인된 형제자매가 있는 존 지원자
 - c. 확인된 형제자매가 없는 존 지원자
 - d. 확인된 형제자매가 있는 학군 내 지원자
 - e. 확인된 형제자매가 있는 학군 외 지원자
 - f. 학군 내 지원자
 - g. 학군 외 지원자
3. 지원자들은 정원이 남아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입학 우선권 순위에 따라 자신의 비-존 학교의 pre-K 프로그램에 입학 허가를 받게 됩니다:
 - a. 현재 해당 학교의 3-K 프로그램에 등록된 지원자
 - b. 확인된 형제자매가 있는 학군 내 지원자
 - c. 확인된 형제자매가 있는 학군 외 지원자
 - d. 학군 내 지원자
 - e. 학군 외 지원자
4. 지원자들은 정원이 남아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입학 우선권 순위에 따라 Pre-K 센터의 pre-K 프로그램들에 입학하게 됩니다:
 - a. 지원자들은 현재 해당 학교의 3-K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음
 - b. 학군 내 지원자
 - c. 학군 외 지원자
5. 만약 학교 내 pre-K 프로그램 내 제공 가능한 정원 보다 많은 지원자들이 현재 3-K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다면, 현재 해당 학교의 3-K 에 등록되어 있는 지원자들은 상기 요약되어 있는 입학 우선권에 따라 해당 학교의 pre-K 프로그램 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섹션 II.C.2-4).
6. 각 pre-K 프로그램 별로, 보다 다양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선발 기준에 그 밖의 우선권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선권은 조기 아동교육부, 학생 등록담당실 및 교육청 법률 자문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추가적인 입학 우선권이 있을 경우, 전형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각 가정에 통보될 것입니다.

D. 1-32 학군 내 유치원 입학 우선권

1. 존 학교들은 공간이 허락하는 한, 등록을 위해 학교에 방문한 시기에 관계 없이 소속된 존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을 교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원자는 반드시 다음 우선 순위에 따라 존 학교에 입학해야 합니다:
 - a. 확인된 형제자매가 있는 존 지원자
 - b. 확인된 형제자매가 없는 존 지원자

공간이 충분하며, 과거 추세 및 학군의 필요에 따라 학생 등록 담당실에서 적절하다고 결정한 경우, 아래 요약된 순서대로 다음 우선 그룹에 따라 배정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학생 등록 담당실 만이 이 우선 순위 밖에서 비-존 지원자의 입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 지역의 존 학교에서 지원자를 수용할 수 없지만 이원언어 프로그램과 같은 특별 프로그램 등의 경우.
 - c. 확인된 형제자매가 있는 학군 내 지원자
 - d. 확인된 형제자매가 있는 학군 외 지원자
 - e. 현재 해당 학교의 pre-K 프로그램에 다니는 학군 내 거주 지원자
 - f. 현재 해당 학교의 pre-K 프로그램에 다니는 학군 외 거주 지원자
 - g. 학군 내 지원자
 - h. 학군 외 지원자
2. 지원서는 반드시 다음의 우선 순위에 따라 비-존 학교 입학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 a. 확인된 형제자매가 있는 학군 내 지원자
 - b. 확인된 형제자매가 있는 학군 외 지원자
 - c. 현재 해당 학교의 pre-K 프로그램에 다니는 학군 내 거주 지원자
 - d. 현재 해당 학교의 pre-K 프로그램에 다니는 학군 외 거주 지원자
 - e. 학군 내 지원자
 - f. 학군 외 지원자
3. 일부 학교의 경우, 보다 다양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선발 기준에 그 밖의 우선권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선권은 학생 등록담당실 및 교육청 법률 자문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추가적인 입학 우선권이 있을 경우, 전형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각 가정에 통보될 것입니다.

E. 1-32 학군 소속 초등학교 등록접수 및 등록(3-K 및 pre-K 예외)

1. 정원에 따라 학생들은 본인의 존 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있습니다.

2. 존 학교가 없는 초등학교 학년 학생들은 본인의 주소지에 따라 배정 받았던 초등학교가 있던 해당 학군 내 학교 정원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3. 유치원 입학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초등학교 연령 대의 학생이 이사 왔다면:
 - a. 존 학교가 있는 학생은 존 학교에서 직접 등록을 하거나 기타 제공 가능한 학교 옵션을 결정하기 위해 패밀리 웰컴 센터를 방문합니다. 학생의 존 학교의 연관된 학년이 등록 상한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학생은 섹션 II.J.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기타 학교 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 b. 존 스쿨이 없는 학생은 패밀리 웰컴 센터에서 학교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비-존 학교 또는 본인의 존이 아닌 학교에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섹션 II.H 를 포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된 정책에 따르거나 학생 등록 담당실에서 달리 정한 바에 따를 때에만 해당 학교에 배정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F. 1-32 학군 중학교 입학, 접수 및 등록

1. 중학교 입학 우선권

- a. 5 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중학교 존 내에 있는 학군 및 만약 재학중인 초등학교가 있는 학군("재학중인 학군")이 다르다면 그 학군에 중학교들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학중인 학군 내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은 해당 학군의 존 소속 주소지에 거주하는 기타 지원자와 동일한 수준의 입학 우선권이 있습니다.
- b. 존 중학교가 있는 학생들은 본인의 중학교 지원서에 해당 학교를 기재하면, 해당 학교 입학 우선권이 있습니다.
- c. 유치원-8 학년 또는 유치원-12 학년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5 학년 학생들은 만약 재학중인 유치원-8 학년 또는 유치원-12 학년을 교육하는 학교를 본인의 중학교 선택 신청서에 선택한다면 해당 학교 입학 우선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 d. 중학교 입학전형 절차 기간 동안 제공 가능한 정원은 다음과 같이 제공될 것입니다(학생 등록 담당실에서 결정):
 - i. 존 학교들: 입학전형 절차를 통해 모든 존 학생들에게 배정을 제의한 후에만 비-존 학생들에게 정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원한 존 학생들은 이의제기를 한 비-존 학생들의 배정을 하기 전에 정원이 남아 있다면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 ii. 유치원-8 학년 또는 유치원-12 학년 학교: 입학전형 절차를 통해 모든 기존의 재학생들에게 배정을 제의한 후에만 기존 재학생이 아닌 학생들에게 정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원한 기존 재학생들은 이의제기를 한 기존 재학생이 아닌 학생들에게 배정을 하기 전에 정원이 남아 있다면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 e. 현재 교육청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5학년 학생이 본인의 신청서에 적은 어떤 학교에도 매치되지 않았다면, 본인의 존 중학교가 있는 학군의 학교에 배정될 것입니다.
 - f. 본인의 존 학교 또는 본인이 재학중인 유치원-8학년 또는 유치원-12학년 학교를 중학교 입학전형 절차에 지원하지 않은 학생은 중학교 때 해당 학교에 등록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생 등록 담당실은 향후 다른 중학교에 전학 요청이 있다면 해당 학교를 고려할 것입니다. 다른 중학교로 전학을 요청한 모든 학생은 반드시 배정을 받기 위해 패밀리 웰컴 센터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2. 중학교 입학전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a. 입학전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교육청 학교에 등록되어 있던 5학년 학생은 중학교에 배정될 것입니다.
 - b. 존 학교가 있는 학생은 존 학교에서 직접 등록을 하거나 기타 제공 가능한 학교 옵션을 결정하기 위해 패밀리 웰컴 센터를 방문합니다. 학생의 존 학교의 연관된 학년이 해당 학년 등록에 대한 상한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학생은 섹션 II.J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기타 학교 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 c. 존 스쿨이 없는 학생은 패밀리 웰컴 센터에서 학교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d. 비-존 학교 또는 본인의 존이 아닌 학교에 등록 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섹션 II.H를 포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된 정책에 따르거나 학생 등록 담당실에서 달리 정한 바에 따라 때에만 해당 학교에 배정받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G. 존 학교 정책

- 1. 어떤 학교의 존 학생들은 이 규정서에 요약된 정책에 따라 이들 학교의 존 프로그램들에 입학 및 등록 우선권을 갖게 되며 반드시 비-존 학생들에게 배정을 하기 전에 배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 2. 비-존 학생들은 본 규정서에 정해진 정책 및 학생 등록 담당실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서만 존 학교에서 학교 입학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존 프로그램들은 존 학생들을 등록시켜야 하며 반드시 이 규정서에 정의된 정책 및 제공 가능한 정원에 따라 이 학생들의 입학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제공 가능한 정원이 있는지에 대한 결정은 학생 등록 담당실, 공간 계획 담당실 및 학군 계획 담당실 및 수퍼인텐던트와 논의하여 보로 담당실에서 내리게 됩니다.(섹션 II.J. 참고)
- 4. 학생이 정원 제공여부 및 수혜 자격 기준에 따라 다른 학교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면 본인의 존학교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H. 비-존 학군, 1-32 초등학교, 중학교 및 K-8 학교 대상 정책

1. 비-존 학교의 1-5 학년이나 7-8 학년에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은 연중 아무 때고 패밀리 웰컴 센터를 방문하여 학교 배정을 요청하십시오.
2. 전형 절차 종료 후 비-존 학교의 유치원이나 6 학년에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은 패밀리 웰컴 센터를 방문하여 학교 배정을 요청 하십시오.
3. 비-존 학교에서는 전형 절차가 종료된 후라도 정원이 허락하는 한 반드시 선착순으로 연중 학생을 등록시켜야 합니다.

I. 존 재조정 정책

1. 존 재조정 계획의 승인 일정에 따라, 학생의 존 학교가 입학전형 절차 기간 동안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생이 입학하는 시점에 효력을 발휘하는 존이 이 학생의 학교 존이 됩니다.
2.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CEC)가 채택한 존 재조정의 영향을 받는 존 학교에 등록된 증명된 형제자매를 가진 학생은 승인된 재조정된 계획과 관련 CEC 에서 이런 우선권을 제공한다면 영향을 받은 학교에서 존 형제자매 우선권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J. 상한 정책(K-8 학년)

1. 존 학교는 본 규정서에 요약된 정책에 따라, 정원 내에서 관할 존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들을 교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존 학교는 어떤 학년의 소규모 학급 규모를 성취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등록을 폐쇄하거나 어떤 학년의 “상한”을 정할 수 없습니다.
3. 그 학교에서 요청을 제출하고 학군 계획 담당실, 학생 등록 담당실 및 수퍼인텐던트와의 조언을 받아 보로 담당실에서 조사하여 해당 학년에 제한을 하는 것이 추가적인 등록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결정하였다면 어떤 학교의 한 학년이 “제한될” 것입니다 보로 담당실에서 해당 학년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결정하였다면, 상한 요청을 승인하고 추가적인 존 학생들이 배정될 학교를 결정할 것입니다(“오버플로 스쿨(overflow school)”).
4. 섹션 Section II.J.3 에 요약된 바와 같이 보로 담당실에서 존 학교의 학년에 대한 상한을 정하게 된 경우에, 이들 존 학생들은 거주하는 학군 내 대안적인 학교 배정을 받을 자격을 갖습니다.
 - a. 이런 학생은 비-존 학생들에 앞서 해당 오버플로 스쿨에서 입학전형 및 등록 우선권이 있습니다.

- b. 보로 담당실에서 본인의 존 학교의 학생의 학년에 대한 상한 제의 요청을 승인함으로써 인해 오버플로 스쿨에 등록하도록 배정받은 어떤 학생도 반드시 오버플로 스쿨 배정을 수용하거나 배정받을 학교에 대한 기타 대안을 찾아야만 합니다.
5. 보로 담당실에서 학년 상한에 대한 승인을 받은 존 학교의 학생들로 이로 인해 오버플로 스쿨에 학교 배정을 받은 경우, 학생 등록 담당실이 정한 마감일까지 본인의 존 학교의 대기명단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는 다음의 절차가 적용됩니다:
- 이런 학생은 본인의 존 학교에 다음 학년도에 제공 가능한 정원에 대한 우선권을 갖게 될 것이며 정원이 이런 학생들에게 대기명단 순서에 따라 배정될 것입니다.
 - 이런 학생들은 존 학교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오버플로 스쿨에 계속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거부하였다면, 학생들은 존 학교에 대한 대기명단에서의 정원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학생이 후에 존 학교로 전학을 요청하였다면, 이런 전학은 대기명단의 모든 다른 재배정 존 학생들이 등록하도록 초대된 후에 제공 가능한 정원이 지속될 때만 보장될 것입니다. 존 학교 복귀 배정을 거절한 학생으로서 상한 계획(capping plan)의 결과로 과밀 학교 통학을 위한 교통편 수혜자격을 갖고 있던 학생들은, 더 이상 교통편을 제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달리 교통편 수혜자격을 있거나 학생 교통 담당실이 정한 지침에 근거해 수혜자격을 있는 경우 제외).
 - 만약 정원이 제공될 수 있다면 5 학년 학년도 동안 등록한 5 학년 학생들이 돌아갈 권리가 있지만 반드시 해당 학교의 6 학년 정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되려면 중학교 입학전형 절차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섹션 II.F.1.a 에 부합하여 학생은 본인의 주소가 존인 중학교가 위치한 학군 뿐 아니라 재학중인 학교가 있는 학군에서 중학교 입학전형 절차를 통해 지원할 자격이 있습니다.
6. 존 학교의 기본적인 의무는 해당 존 학생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만약 존 학교에서 모든 존 학생을 수용할 수 없고 정원 상한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해당 학교의 비-필수 프로그램들을 축소하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K. 진학 정책

- 이 섹션에 요약되어 있는 정책들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학교들에 적용됩니다: 영재(G&T) 프로그램, 특수목적 고등학교, 거치 학교 및 신규 이민자를 위한 학교, 영어학습학생 및 다언어학습학생.

2. 섹션 VII.B 및 VII.C 에 부합하여, 임시 거주지 또는 위탁 보호의 상황으로 인하여 뉴욕시가 아닌 지역에서 거주하는 임시 거주지 또는 위탁 보호 학생들은 원래 다니던 학교 및 진학하는 존 학교 또는 만약 존 학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학교에서 이것이 학생에게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된다면 계속 교육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1-32 학군 및 75 학군 양쪽 모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전형 절차로 활성화되는 교육청 학교들의 몇 개의 입학 시점이 있습니다. 각 학년 밴드 별로 그에 맞는 입학 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5 학년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하려면 유치원 때가 입학 시점입니다. 학생이 다른 학년 밴드로 이동할 때, 그것을 "진학"이라고 합니다.
4. 1-32 학군 유치원-8 학년 및 6-12 학년 진학
 유치원-8 학년 또는 6-12 학년으로 구성된 학교들은 반드시 몇 개의 입학 시점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이 유치원-8 학년 또는 6-12 학년으로 구성된 학교에 입학 할 때, 해당 학생은 다음 학년 밴드에 대한 입학 우선권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학생은 지원자격이 되는 다른 학교나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존 학교인 유치원-8 학년을 교육하는 학교에 이미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학생은 6 학년 입학 우선권이 있습니다.
5. 1-32 학군 중학교 진학
 중학교 입학전형 절차의 결과로 어떤 학교에 매치되었으며 그 후에 뉴욕시 학교 학군을 퇴교했던 학생은 그 학교에 등록하기 위해 돌아왔을 때 뉴욕시 내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리고 다른 학교에서 해당 학년도를 마치지 않았다면, 매치되었던 학년도 중 언제 든지 본인이 매치되었던 학교에 등록할 권리가 있습니다.
6. 1-32 학군 고등학교 진학
 - a. 8 학년에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고등학교 입학 절차에 본인의 존 고등학교를 지원하였다면, 입학 사이클에 대한 고등학교 안내서에 설명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해당 존 고등학교에 대한 우선권 또는 입학이 보장됩니다.
 - b. 고등학교 입학전형 절차의 결과로 어떤 학교에 매치되었으며 그 후에 뉴욕시 학교 학군을 퇴교했던 학생은 그 학교에 등록하기 위해 돌아왔을 때 뉴욕시 내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리고 다른 학교에서 해당 학년도를 마치지 않았다면, 매치되었던 학년도 중 언제 든지 본인이 매치되었던 학교에 등록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복역을 하고 돌아온 학생도 포함됩니다.
7. 뉴욕시 학교 학군이 아닌 학교에서 해당 학년도를 마친 후 뉴욕시 학교 학군을 떠났다 돌아온 학생은 패밀리 웰컴 센터 또는 75 학군 프로그램에 추천된 학생은 75 학군 배정 담당실로 보내져 다음 학년도에 다니게 될 학교에 배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뉴욕시 학교 학군을 떠나기 이전에 배정받았던 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나, 본래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고려될 것입니다. 1-32 학군 학교들에 등록한 학생들에 대한 배정은 학생 등록 담당실에서 최종 결정을 그리고 75 학군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들에 대한 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75 학군 배정 담당실에서 내리게 됩니다.

III. 재입학

뉴욕시 학교 학군에 돌아와서, 학생은 패밀리 웰컴 센터 또는 75 학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75 학군 배정 담당실에 제공 가능한 학교 옵션들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할 수 있습니다.

NYC 학교 학군으로 복귀하는 학생에게는 자신이 퇴학 전에 다녔던 DOE 학교에 복귀하여 이 학교에서 퇴학 시점 제공하던 최종 학년까지 다닐 권리가 있으나, 이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모든 이런 배정은 교육청 학교의 제공 가능한 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생과 부모 및 보로 담당실 연락 담당과 의논하여 학생 등록 담당실에서는 전에 다니던 학교가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다른 배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75 학군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은 75 학군 배정 담당실에서 학생 및 부모와 논의하여 전에 다니던 학교가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할 경우 다른 배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의 돌아오는 권리에 관한 모든 질문은 학생 등록 담당실 또는 75 학군 프로그램에 추천된 학생들의 경우에는 75 학군 배정 담당실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A. 초등학교 및/또는 중학교 학생

1. 아동은 이전 학교가 존이건 비-존이건 관계 없이 이 학교에 자리가 있다면 복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만일 학생이 자신의 존 학교로 복학하고자 하나 해당 학년 정원이 상한된 경우, 이 학생은 섹션 II. J 에 근거하여, 정해져 있던 오버플로 학교로 배정될 것입니다.
3. NYC 학교 학군에 복귀하는 학생은 적용 가능하며 정원이 있다면 존 학교에 직접 등록하거나 패밀리 웰컴 센터를 방문하여 비-존 학교 등록을 포함한 기타 배정 옵션을 상의해 볼 수 있습니다.

B. 이전에 영재(G&T) 프로그램에 재학했던 학생

1. 학군 프로그램
 - a. 동일 거주지 학군으로 복귀하는 학생은 해당 프로그램 정원이 남아있는 경우 동일한 영재 프로그램에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b. 만약 학생이 전에 공부하던 영재 프로그램에 정원이 남아 있지 않다면 거주하는 학군 내 다른 학군 영재 프로그램에 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c. 이전과 다른 거주 학군으로 복귀하는 학생은 새롭게 거주하는 학군 내 영재 프로그램에 정원이 남아 있을 경우, 배정받는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뉴욕시 프로그램

- a. NYC 학교 학군으로 돌아온 학생은 해당 프로그램 정원이 남아있는 경우 전에 다니던 뉴욕시 영재 프로그램에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b. 학생이 이전에 다니던 영재 프로그램에 자리가 없을 경우, 이 학생은 다른 영재 프로그램으로의 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 고등학교 학생

1. NYC 학교 학군을 떠났던 학생은 본인이 이전에 다녔던 고등학교(특수목적 고등학교, 거처 학교 및 신규 이민자를 위한 학교, ELL을 위한 학교 및 다언어학습학생을 모두 포함하나 이에만 국한되지 않음)에 다시 다닐 권리가 있습니다. 졸업장을 취득하지 못하고 퇴교했던 학생은 21세가 되는 해 마지막 학년도까지 학교에 재입학할 수 있습니다.
2. NYC 학교 학군로 복귀하는 학생은 패밀리 웰컴 센터로, 75 학군 프로그램에 추천된 학생은 75 학군 배정 담당실로 보내져 학교를 배정받게 될 것입니다.

D. 법원에서 명령한 장소, 보호시설, 또는 치료 프로그램으로부터 돌아온 학생

1. 법원에서 명령한 장소, 보호시설, 또는 치료 프로그램으로 이관될 당시 DOE 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은 자신이 본래 다니던 학교로 복학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이 학생들 중 일부는 뉴욕시 학교 학군으로 복교할 때, 다른 학교로 배정받는 것이 더 이로우 수 있습니다. 학생 등록 담당실 또는 75 학군 프로그램에 추천된 학생 대상 75 학군 배정 담당실은 보로 담당실 연락 담당 또는 79 학군 중 더 적절한 사람과 제공 가능한 정원이 있는 다른 학교로 이 학생을 등록 또는 추천할 지 여부를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IV. 전학

학교는 전학 요청을 검토하기 위해 학생 가족들과 면담을 하여야 하며 전학이 허가되면 모든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A. 전학에 대한 모든 요청은 반드시 다음의 예외를 제외하고 학생 등록 담당실에서 승인하여야 합니다:

1. 교육감 규정 A-450 및 A-443 에 부합하여 정학 담당 보로 디렉터가 관리하는 수퍼인텐던트 정학 후속 비자발적인 전학과 자발적인 전학(교육감 규정 A-450 에 따라 IEP 가 있는 학생은 비자발적인 전학을 할 수 없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2. 자신의 존 학교(정원이 남아 있을 때)로 학생이 전학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을 받는 학교의 교장은 반드시 해당 학생을 입학시켜야 합니다.
 3. 다언어학습학생 담당실(DML), 다언어학습학생 보로 담당실 디렉터 및 수퍼인텐던트들이 가정에서 재학중인 학교 또는 패밀리 웰컴 센터(제출 방법에 관계 없이 여전히 DML, 보로 담당실 및 수퍼인텐던트가 반드시 승인하여야 함)를 통해 추진한 이원언어 또는 전환적 이중언어 프로그램으로 영어학습학생의 전학을 승인한 경우
 4. 이중언어 특수교육이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가 있는 학생을 위한 특수 프로그램, 또는 지적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등의 특별 프로그램이 새롭게 필요하여 전학해야 하는 경우
 5. 학생의 IEP 에 추천된 적절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학생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제공할 수 없음이 서류로 입증되어 특수교육 담당실에서 승인한 전학
 6. 공정한 심의 명령에 의한 전학, 및
 7. 75 학군 및 79 학군 내 전학
- B. 모든 필요한 서류를 1-32 학군에 등록된 학생들은 패밀리 웰컴 센터로 또는 75 학군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들은 75 학군 배정 담당실로 제출한 경우 아래와 같은 특별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타 전학이 허용될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학생 등록 담당실 또는 75 학군 배정 담당실은 전학 요청을 거부 또는 승인하고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결정할 것입니다.
1. 거주 학군 변경으로 인한 학군 영재 전학(유치원-5 학년 학생들만 해당): 학군 영재 프로그램에 다니는 학생이 다른 학군으로 이사한 경우, 이 학생의 학부모는 자녀의 새로운 거주 학군 영재 프로그램으로의 전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보육 문제에 따른 전학(유치원-5 학년 학생들만 해당): 직장 및/또는 보육 기관과 학교까지의 거리에 따른 보육 문제로 인한 어려움에 따라 학부모는 자녀의 전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반드시 고용주 및 보육 제공처로부터 보육 문제가 있음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형제자매 전학(유치원-5 학년 학생들만 해당): 섹션 II.A.1 에 규정된 바와 같이 증명된 형제자매가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을 때, 학부모는 형제자매 전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의료상의 이유로 인한 전학/장애인 편의시설로 인한 전학: 학부모는 자녀의 장애로 인한 타당한 편의시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전학을 요청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예를 들어 건강 문제나 학교에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학부모는 학부모 본인에게 물리적으로 학교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장애가 있을 경우, 자녀의 전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반드시 적절한 보건 또는 재활 전문가가 작성하고 (의료 기관의 레터헤드에 편의시설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장애상태 및 전학을 추천하는 사유를 명시) 서명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생 등록 담당실에서는 전학 결정을 내림에 있어 학교 보건 담당실 및/또는 뉴욕시 보건 및 정신위생청에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동의 하에, 담당직원이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여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75 학군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은 75 학군 배정 담당실에서 가족 또는 의료 제공처에서 IEP 에 제출한 제공 가능한 추가적인 서류를 활용하여 적절한 학교로 학생을 전학 시킬 수 있습니다.

5. 안전문제에 따른 전학: 안전문제에 따른 전학에 대한 절차는 교육감 규정 A-449 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안전문제에 따른 전학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허용될 수 있습니다: (a) 모든 학생 성공법(ESSA)에 따라 학교 내에서 학생이 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또는 (b) 해당 학교에 지속적으로 다니는 것이 학생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괴롭힘, 협박 및 왕따 포함). ESSA 안전상의 사유로 인한 전학 요청은 보로 정학담당 디렉터가 조정할 것입니다.

비-ESSA 안전문제에 따른 전학을 고려하며, 안전문제에 따른 전학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패밀리 웰컴 센터 또는 75 학군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의 경우 75 학군 수석 디렉터 또는 디렉터가 학교장/담당자로부터 해당 요청 서류를 접수한 후 1 주일 이내에 내리게 될 것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안전 문제로 인한 전학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i. 가정에서는 요청을 패밀리 웰컴 센터로 이송할 재학중인 학교에 안전문제에 따른 전학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75 학군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의 요청은 해당 학교에서 75 학군 담당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 ii. 안전문제로 인한 전학은 패밀리 웰컴 센터를 방문하여 학생이나 학부모의 서면 진술서, 또는 전학 요청 사유를 입증할 만한 기타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요청할 수 있습니다. 75 학군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의 가정들은 이 서류를 75 학군 담당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 b. 안전문제에 따른 전학이 고려되기 위해서, 학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패밀리 웰컴 센터로 보내거나 75 학군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은 75 학군 담당실로 보내야 합니다.
 - i. 안전문제에 따른 전학 접수 양식
 - ii. 안전문제에 따른 전학 조사 요약서

iii. 학교 사건 보고서 또는 기타 학교 문서

가정에서 경찰 조사서, 접수 번호 또는 법원의 관련 서류를 학교로 제출하였다면, 이후 해당 학교에서 이런 서류 또한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전문제에 따른 전학을 처리 또는 승인하는데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 c. 만약 제출된 서류들이 안전 문제가 있음을 설명하는데 충분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디, 안전담당 교감 또는 학교장은 반드시 추가적인 정보를 학생 등록 담당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75 학군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은 75 학군 담당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d. 안전 문제로 인한 전학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의 성격에 따라, 패밀리 웰컴 센터 수석 디렉터 또는 디렉터 또는 75 학군 담당실은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의 최고 책임자(Chief Executive Officer)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학생 서비스 담당 보로 오피스 디렉터 및 보로 안전 디렉터와 논의할 수 있습니다.
- e. 학생을 전학 시키는 것이 안전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 결정된다면(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관계 없이), 패밀리 웰컴 센터 수석 디렉터 또는 디렉터 또는 75 학군 담당실은 안전문제에 따른 전학을 승인하고 학생에게 새로운 학교 배정을 제안할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 검토 및 결정은 업무일 기준 5 일을 초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f. 만약 학생 또는 가정에서 학교 인근이지만 학교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사건(들)로 인해 안전문제에 따른 전학을 요청하거나 학교에서 사건 보고서를 갖고 있지 않지만 해당 가정에서 자녀가 지속적으로 해당 학교에 다니는 것이 자녀를 안전하지 않게 한다고 믿는다면, 패밀리 웰컴 센터 수석 디렉터 또는 디렉터 또는 75 학군 담당실에서는 가이던스 전학(섹션 IV.B.9 참고) 또는 기타 전학(섹션 IV.C 참고)과 같은 다른 종류의 전학 요청을 제출하여 가정과 전학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학교에 기록이 없는 집단 따돌림 또는 괴롭힘 발생 의혹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6. 운동을 위한 전학(고등학생 만 해당)

- a. 일반적으로 운동을 이유로 전학이 허가되지는 않습니다.
- b. 다만 특정 운동 종목의 공식적인 공립학교운동리그(PSAL) 장부에 이름이 올라있으며 단계적 폐교 조치가 내려져 학교 특정 운동을 계속할 수 없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운동선수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운동 종목의 공식적인(PSAL) 장부에 이름이 올라있는 학생 운동 선수로 팀이 해체된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또한 기타 학교로 전학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생 등록 담당실에서 정원이 남아 있으며 해당 운동 종목의 PSAL 팀을 운영하며 학생 운동 선수의 학업적 체육적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는 적절한 학교를 배정할 것입니다.

- c. 특정 운동 종목의 공식 PSAL 장부에 이름이 올라있는 학생 운동 선수로 공립학교 선택(Public School Choice)에 따른 전학을 신청한 학생은 본인의 공립학교선택 신청서에 있는 학교로만 전학할 자격이 있습니다.
- d. 상기 b 및 c 하위 문단들에 요약된 바와 같은 경우, 학생 운동 선수는 새로운 학교에서 공식 PSAL 팀의 참가 자격이 보장되지 않으며 반드시 새로운 학교의 팀에서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 e. 고등학교 운동 선수에 관한 모든 규정은 PSAL 학생 운동 선수 규칙과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다음 웹사이트에서 검색: www.psal.org).

7. 통학 어려움에 따른 전학(고등학생만 해당)

- a. 가정에서는 반드시 통학 어려움에 따른 전학 요청을 위해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b. 가정에서 학교까지의 통학시간이 90 분이 넘거나 대중 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예 3 번 이상 대중 교통을 갈아 타야 함)에만 통학 어려움에 따른 전학이 고려될 것입니다.

8. 가이던스 전학

- a. 가이던스 전학은 학부모 또는 섹션 VII.A 에 규정된 바와 같은 독립한 미성년자, 18 세 이상 또는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 만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을 대신하여 가이던스 전학을 요청하는 기타 개인은 반드시 이런 전학을 원하는 학생의 학부모, 독립한 미성년,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 또는 18 세 이상의 학생의 서면 동의 표명을 제공하여야만 합니다. 이런 서면 동의서는 반드시 학부모, 독립한 미성년,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 또는 18 세 이상의 학생에게 동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패밀리 웰컴 센터 또는 75 학군 배정 담당실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 b. 학부모 또는 독립한 미성년자, 18 세 이상 또는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는 학생이 학업적 그리고 사회적 발달이나 성취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안 배정으로 이런 우려들을 해결 할 수 있다면 가이던스 전학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c. 가이던스 전학 요청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에 따라, 학생 등록 담당실 또는 75 학군 배정 담당실은 수퍼인텐던트, 학생 서비스 보로 담당실 디렉터나 가이던스 및 클라이밋 매니저, 보로 안전 디렉터, 보로 담당실 보건 디렉터 또는 요청의 이유에 대한 전문성 및 관련이 있는 기타 문제 전문가들과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 d. 전학 요청이 학업 수행도 또는 만성적인 출결 문제에 관련된 요청이라면, 학생 등록 담당실 또는 75 학군 배정 담당실에서는 수퍼인텐던트로부터 승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등록 담당실, 75 학군 배정 담당실 및/또는 수퍼인텐던트는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학교장에게 연락하여 전학과 관련된 증거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 이 가이던스 전학 절차는 오직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주도**했을 때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여 **학교장**이 이 학생의 전학절차를 시작하고자 할 경우, 이러한 전학에는 비자발적인 전학절차를 다룬 교육감 규정 A-450 이 적용되며 학교장은 관련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f. 학생이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에 따른 정학을 요청하였으나 가족 또는 학교 어느 쪽에서도 안전에 따른 전학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지 못하였거나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학생 등록 담당실이나 75 학군 배정 담당실에서는 이런 요청을 가이던스 전학 또는 적절하다면 기타 전학으로 해당 전학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C. 기타 전학: 문서화되지 않은 어려움으로 인한 것을 포함한 기타 전학은 학생 등록 담당실 또는 75 학군 프로그램이 추천된 학생들 대상 75 학군 배정 담당실에서 상황에 따라 전학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학생 등록 담당실 또는 75 학군 배정 담당실에서는 전학 요청을 거부 또는 승인하고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결정할 것입니다. 어떤 특정 학교 배정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학교 배정은 정원 제공 가능 여부 및 적용 가능한 경우 수혜 자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V. 장애 학생의 입학 및 등록 정책

입학전형 절차, 재입학 및 등록을 관장하는 정책들을 포함하여 장애가 없는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모든 학교 입학 및 등록 정책은 장애 학생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A. IEP 를 갖고 있는 학생들의 전학 및 배정은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처리됩니다:

1. IEP 상의 프로그램에 변화가 있을 경우 장애학생들은 이것이 75 학군 배정이나 비-공립학교로의 배정이 필요한 변화가 아닌 이상, 재학중인 1-32 학군 학교에 계속 다닐 권리가 있으며 그럴 것이 기대됩니다.

2. 75 학군 배정에서 1-32 학군 배정이 추천되는 IEP 프로그램의 변화가 있을 때, 해당 75 학군 배정 담당실은 학생 등록 담당실로부터 1-32 학군 학교 배정을 요청할 것이며 학생에게 학교 배정을 제공합니다.
3. 1-32 학군 학교의 특수 프로그램 및 서비스
 - a.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 지적 장애가 있는 학생(ACES), 이중언어 특수교육이 추천된 학생 및 75 학군 포함 서비스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을 포함한 특수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받은 학생은 교육청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있는 새로운 배정을 찾기까지 재학중인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전학하게 될 것입니다.
 - b. 만약 최종 학년까지 어느 시점에라도, 학생의 IEP 에 특수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기재되었더라도, 이 학생은 최종 학년까지 재학중인 학교에 계속 다닐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정원이 생기면 본인의 존 학교로 돌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 B. 뉴욕시 학교 학군에 새롭게 등록 또는 돌아오려는 IEP 를 갖고 있는 학생은 이 규정에 요약되어 있는 재입학 및 등록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뉴욕주가 아닌 곳에서 받은 IEP 를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다음의 추가적인 절차가 적용됩니다:
 1. 특수교육 위원회(CSE)이나 학교는 비-DOE IEP 에 명시된 내용과 유사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 동등한 서비스 계획(CSP)을 작성할 것입니다.
 2. 학교는 즉시 CSP 를 실행할 것입니다. 학생의 학교 또는 적절할 때에는 CSE 에서 새로운 IEP 를 30 일 내에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C. 장애인 편의 시설이 필요한 학생

유치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전형 절차에서 입증된 편의시설이 필요한 학생은 교육청에서 이런 학생들의 편의 시설 필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결정한 학교들에 대한 첫 번째 입학 우선권이 있습니다. 선별 중학교 및 고등학교 프로그램의 경우, 학생들은 반드시 입학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VI. 주거지 판별 & 증빙

- A. 학생은 접수, 등록 및 입학의 목적으로 하나의 법적 주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 B. 학생의 거주지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거주지는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거주할 의도를 갖고 있는 정해진 학교 학군의 지리적 경계선 내에서 생활을 위해 물리적으로 머물 곳으로 정의됩니다.
 2. 학생의 거주지는 학생의 실질적인 보호, 돌봄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에 따라 결정됩니다.

3. 부모가 따로 사는 학생의 경우, 학생의 거주지는 양육자로서 관리를 제공하는 부모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동 양육권을 갖게 된 부모의 경우 학생의 주거지는 우선적인 물리적 양육권을 갖게 된 부모의 거주지로 정합니다.
 4. 학부모가 한 곳 이상의 뉴욕시 주거지를 갖고 있다면, 학교 등록을 목적으로 한 주거지는 해당 학생이 생활하는 곳으로 정해야 합니다.
- C. 주거지 증빙은 반드시 학생을 학교에 등록시킬 때 제출되어야 합니다. 전화 고지서, 크레딧카드 고지서, 의료보험 카드 등은 주소 증빙 서류로 접수될 수 없습니다. 주소 증빙을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서류들 중 두 가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서류에는 집 주소가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합니다.
1. 주소지 증명을 위해서는 다음 중 **두 가지**를 제출하면 됩니다:
 - a. 거주자의 임대 계약서, 집문서, 또는 모기지 고지서
 - b. 유틸리티 회사(예, National Grid, Con Edison, 또는 Long Island Power Authority)에서 발급한 거주자의 성명이 적힌 주거용 공과금 고지서(가스 또는 전기), 반드시 지난 60 일 이내 발급된 것
 - c. 발급된 지 60 일 이내의 주거용 케이블 TV 고지서 (학부모 성명 및 거주지 주소가 명시된 것)
 - d. 지난 60 일 이내에 국세청(IRS), 뉴욕시 주택청, 연방 난민 지원실, 인적 자원국(HRA), 아동 복지국(ACS) 또는 아동 복지국 계약처 등을 포함한 연방 정부, 주 정부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서 발급한, 거주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서류 또는 레터헤드가 찍힌 편지
 - e. 거주자의 현 재산세 납부 고지서
 - f. 주거용 상수도 고지서 (반드시 90 일 이내 발급된 것이라야 함)
 - g. 집 주소가 포함된 렌트 영수증; 반드시 지난 60 일 이내 발급된 것이라야 함.
 - h.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주, 시, 또는 기타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IDNYC 카드 포함)으로서 집주소가 적혀있는 것
 - i. 전년도 소득세 보고 양식
 - j.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공식 뉴욕주 운전면허증이나 임시 운전 허가증
 - k. 지난 60 일 이내 발급된 세금 원천징수나 집 주소가 적혀있는 급여 수령 명세서 등, 고용주가 발급한 공식 급여 명세서; 고용처의 레터헤드를 사용한 편지는 거주지 증빙으로 접수되지 않음. 반드시 집주소가 적혀 있고 발급 지 60 일 이내의 것이라야 함
 - l. 유권자 등록 서류(학부모 성명 및 거주지 주소가 명시된 것)

- m. 거주지로 결정되는 각종 멤버십(예, 주민 협회 등)으로서 학부모의 성명 및 거주지 주소가 명시되어 있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
- n. 60 일 이내의 발급된 법적 양육권 지정 명령 또는 후견인 문서, 또는 이와 유사한 자녀 양육권 증빙서류로서 아동의 성명과 집주소가 적혀 있는 것

상기 어떤 문서도 한 가지 만으로는 거주지 증빙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 3 자 공술서](#)가 제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지 증빙서류 두 가지가 필요하며, 제 3 자 공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증빙서류 세 가지(아래 제 2 문단에 설명한 바와 같이)가 필요합니다. 학부모가 아파트나 주택을 재임대하고 있거나 한 가정 이상이 주거 공간을 공유하고 있으며 한 명 만이 임차인 또는 주택 소유자인 경우, 거주지는 학부모 본인과 원 임차인이 서명하고 공증받은 "거주 공술서"(해당 가정이 해당 아파트나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와 집주소를 확인하는 두 가지 서류를 통해 거주지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거주 공술서에 한 서명은 공증받는 것이 좋으나 공증받은 서명이 없을 경우, 원 임차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고 학부모가 해당 아파트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이러한 공술서도 접수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이러한 유형의 주소 공술서를 얻기 힘든 경우, 이 학부모가 특정 주소지에 거주한다는 내용을 입증하는 제 3 자가 작성한 공술서("제 3 자 공술서")를 상기 VII.A.1 섹션에 명시된 두 가지 다른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더부살이를 하는 학생을 포함한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학생 및 위탁 보호 학생들은 등록 및 입학에 위해 이런 공술서를 제출할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2. 만약 주소지 증빙에 대한 타당성에 의문점이 있거나 학부모가 적절한 주소지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학생 등록 담당실이나 학교 중 적절한 곳에서 학생을 임시로 등록시킬 것입니다. 이런 경우 주소지 조사의 결과에 따른 유보조치로 학생이 임시로 학교에 등록되었음을 안내하는 [임시 등록 통지문\(Provisional Registration Notice\)](#)을 학부모에게 보낼 것입니다. 학생이 등록한 학교에서 아래 "주소지 위조 및 조사"에 관련된 절차에 따라 주소 증명에 관한 조사를 시작할 책임이 있습니다. 조사가 유보된 동안 학생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으며 학생은 등록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임시 거주지에 사는 학생의 경우, *매키니-벤토법*의 요건에 따라 실거주지 조사 및 거주지 증빙서류 요건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더부살이를 포함하여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학생들 및 위탁 보호 학생들은 원 임차인/세입자 서류를 주거 공술서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D. 허위 주소지 조사

학생의 주소지에 관한 의문점이 있거나 학생의 등록을 위해 주소지를 위조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학교에서는 반드시 이런 문제를 발견한 지 30 일 이내에 주소지 증빙을 조사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1. 만약 학생이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없는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학교장은 반드시 보로 담당실 연락 담당자에게 조사결과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보로 담당실 연락 담당자는 이 결과를 검토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로 담당실 학생 서비스 담당 디렉터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전학을 추천할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 보로 담당실의 연락 담당자가 해당 학생이 거주하는 실제 주소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보로 담당실 학생 서비스 담당 디렉터 또는 그 대리인은 반드시 조사와 관련된 문서를 검토하고 이것이 전학을 명하기에 충분한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보로 담당실 학생 서비스 담당 디렉터 또는 그 대리인은 반드시 패밀리 웰컴 센터 이규제큐티브 디렉터 또는 디렉터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 승인을 알려야 합니다.
2. 만약 학생이 전학하게 된다면 학교장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통지문을 학부모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a. 조사를 통해 발견한 내용
 - b. 재학중인 학교에 다닐 자격이 없으며 적절한 학교로 전학 조치 함
 - c. 학생이 등록 자격을 갖춘 새롭게 배정된 학교의 이름, 번호 및 주소 및 등록을 위해 학생이 새 학교로 배정될 날짜
 - d. 통지문을 받은 지 5 일 이내에 학교의 의혹을 뒷받침한 보로 담당실 학생 서비스 담당 디렉터 또는 그 대리인의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3. 보로 담당실의 학생 서비스 담당 디렉터 또는 그 대리인이 학교장 및 패밀리 웰컴 센터 이규제큐티브 디렉터 또는 디렉터와 논의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이의제기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학생의 전학이 유보될 것입니다. 이의제기에 대한 판결은 학교 수업일 기준 10 일 내 이루어 질 것입니다.
4. 학생이 전학할 적절한 학교를 결정하기 위해 학부모는 주소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이 요구될 것입니다.
 - a. 주소지 확인 과정에서 학생의 실제 존 학교가 파악된 경우, 현재 재학 중인 학교 또는 배정받은 학교의 교장이 이 학생의 가족에게 서면으로 존 학교를 안내하는 통지문을 발송합니다(위의 D.2. 문단 참고).

- b. 만약 학생에게 존 학교가 없거나 이 학생이 고등학교에 다닐 자격이 되는 경우, 패밀리 웰컴 센터 이규제큐티브 디렉터 또는 디렉터가 새 학교를 결정합니다. 타 보로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이 학생의 전학을 받게 될 보로 패밀리 웰컴 센터 이규제큐티브 디렉터 또는 디렉터가 새 학교를 결정하고 적절하다면 학생의 등록할 학교를 배정합니다.
 - c. 만일 학생이 뉴욕시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이 학생은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학부모는 교육감 규정 A-125 에 따라 학생이 학교에 출석한 기간 동안의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학생은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진 학기가 종료되면 비거주자로서 퇴교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학생은 비-거주자로서 뉴욕시 학교 학군에 등록을 유지할 수 있는 신청서 접수와 관련한 어떤 권리도 상실하게 됩니다.
5. 임시 거주지 및 위탁 보호 학생들은 학교에 등록하기 위해 거주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학생의 주소지에 관한 의문이 생기거나 제출한 주소가 허위라는 의심이 있을 경우, 실주거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방문을 통해 학생의 임시 주소가 확인되면, 학생은 추가 주소지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계속해서 해당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VII. 특수 상황

A. 보호자 없이 방문한 학생

1.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 및 독립한 미성년자

- a. 이 규정서의 목적을 위해, 교육감 규정 A-780 에 정의된 바와 같이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는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학생과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아래 섹션 VII.C 참고). 이들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방문하거나 접수, 등록 또는 전학을 위해 서류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 b. 독립한 미성년자는 결혼을 하였거나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으며 부모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으며 위탁 보호가 필요하지 않는 학생(16-17 세)을 의미합니다. 이들 학생은 접수, 등록 또는 전학을 위해 부모와 함께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i. 독립한 미성년자는 독립 미성년 공술서 서명 또는 결혼 증명서를 제공하도록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 ii. 거주지 증빙으로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발급 받은 렌트 영수증, 거주지에 세간을 들여준 사람으로부터의 진술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 c.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 또는 독립한 미성년자는 접수, 등록 또는 전학을 위해 성인과 함께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패밀리 웰컴 센터, 75 학군 담당실 또는 학교 관계자들은 반드시 적절한 경우 해당 학생의 나이와 상황을 고려하여 ACS 통보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실종 아동 및 가출 청소년

- a. 실종 아동은 정당한 양육권을 갖고 있는 부모로부터 빼앗긴 아이를 의미합니다.
- b. 가출 청소년은 18 세 이하이며 집이나 법적 거주지로 배정된 장소에서 부모의 허락 없이 없어진 개인을 의미합니다.
- c. 학교에 접수하고자 하는 학생이 실종 아동 또는 가출 청소년이라는 의심이 든다면, 학교장은 반드시 해당 학생을 등록시키고 즉시 인근 경찰서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 3. 학부모 없이 방문한 교육청 학교에 현재 등록되어 있지 않은 모든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방문하지 않은 이유를 즉시 결정할 수 없다고 해도 등록접수하여야 합니다.

B.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학생

1. 정의:

- a. 고정적, 정기적, 적절한 야간 거주지가 없는 학생을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학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아동이 포함됩니다:
 - 집을 잃었거나 경제적 어려움 또는 기타 유사한 이유로 타인과 함께 거주("더부살이"이라 칭함)하거나 적절한 거주 대안 없이 모텔, 호텔, 트레일러 파크나 캠핑장에 거주하는 경우
 - 공적으로 보조 또는 사적으로 운영되는 쉼터(상업적으로 운영되는 호텔, 종교 관련 쉼터,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거 프로그램, 정신질환자를 위한 전환 거주 시설 포함)를 포함하는 비상 또는 전환적 쉼터에 거주하는 경우
 - 병원에 버려진 경우

- 일반적으로 정규 숙박 시설로써 사용되지 않는 공공 또는 사설 장소에서 거주하는 경우
 - 자동차, 공원, 공공장소, 버려진 빌딩, 표준 이하의 주거지, 버스 또는 기차 역이나 비슷한 장소에서 거주하는 경우
- b. 원래 학교란 학생이 영구적인 주거지에 거주할 때 다녔거나 또는 이 학생이 마지막으로 등록하였던 학교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유아원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2.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학생은 학생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적용 가능한 원래 다니던 학교에 남아있거나 임시 거주지 위치에 따라 재학 자격을 가지고 입학 기준을 충족하는 새로운 학교로 전학할 수 있습니다.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고등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전학하기 전에 통학에 따르는 어려움을 증명할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학생이 새로운 거주지에 따라 새로운 학교에 다니기로 선택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접수 및 등록을 위해 필요한 기록들이 없거나 제공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해당 학교는 즉시 학생을 접수 및 등록하여야 합니다. 노숙 학생의 권리에 대한 더욱 상세한 정보는 교육감 규정 A-780 을 참고하십시오.
 3. 일반적으로 학생을 원래 학교에 남아있게 하는 것이 학생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학부모가 다른 학교에 등록하기를 요청하는 경우만이 예외입니다. 최선의 이익에 관한 판단을 내릴 때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학이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성취도, 교육, 건강, 안전 및 선택 우선권에 미치는 영향.
 - a. 교육감 규정 A-780 섹션 iv 에 부합하여, 학생이 원래 학교에 남아있어야 할지 또는 자격 기준 및 정원에 따라 등록할 자격을 갖춘 새로운 학교로 전학하여야 할지 관련 분쟁이 있다면, 교육청에서는 분쟁의 최종 결정이 유보된 경우, 반드시 학부모(또는 독립한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가 지명한, 원래 학교 또는 자격 및 정원 여부에 따라 배정된 새로운 학교로 학생을 등록 및 전학 시켜야 합니다.
 4. 가정 폭력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학생의 주소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른 담당실이나 기관과 공유해서는 안됩니다.
 5. 영구 주소지가 없다는 것이, 학생의 입학, 접수 및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적절한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학생은 일반적으로 등록과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 하더라도 *메키니-벤토 홀리스 지원법* 타이틀 VII(42 U.S.C. §11431) 및 교육감 규정서 A-780 에 따라 즉시 뉴욕시 학교에 등록 및 출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6. 진학하는 학년(3-K, pre-K, 유치원, 6 학년 및 9 학년)에 대한 입학전형 절차에 참여하는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학생:
 - a.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영주 거주지에 생활하는 학생들과 동일한 입학 우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b. 뉴욕시가 아닌 지역의 임시 거주지로 옮겨야 할 상황이라, 다른 경우에는 지원할 자격이 없거나 배정 받지 못할 경우라도 임시 거주지 상황에 따라 학교 또는 프로그램에 지역 입학 우선권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7.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학생이 학교에서 교육하는 마지막 학년 전 학년에 현재 등록되어 있으며 뉴욕시가 아닌 지역의 영구 거주지로 이사하였다면, 비-거주자 등록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원래 다니던 학교의 마지막 학년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 학교에 남아 등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C. 위탁 보호 학생

1. 정의:

- a. "위탁 보호"란 본인의 생물학적 또는 입양 부모로부터 떨어져 24 시간 대체 보호를 받으며 아동 복지 기관이 배정 및 보호 의무를 지닌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위탁 패밀리 가정, 친척집의 위탁 가정, 그룹 홈, 응급 쉼터, 거주시설, 아동 보호 시설 및 입양 전 가정 등이 포함되나, 반드시 이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b. 원래 학교란 학생이 위탁 보호에 배정될 시점에 다니고 있었거나 이 학생이 마지막으로 등록하였던 학교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유아원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일단 학생이 새로운 학교로 전학하는 것이 학생에게 가장 최상이라는 결론을 도출되었다면, 이전에 학생이 등록하였던 어떤 학교도 유보된 수혜자격과 정원 제공 여부를 요청 및 고려할 것입니다.
2. 위탁 보호 장소가 변경된 위탁 보호 학생은, 이 학생이 다른 스쿨 존, 학군, 시, 또는 주로 이주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학생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원래 학교에 출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 a. 학생의 최선의 이익에 관한 판단은 학생 중심의 요소들을 고려함으로써 이뤄지며, 이러한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위탁 보호 장소에서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접근성, 학생의 및/또는 생물학적 또는 입양 부모 또는 학생의 교육관련 결정을 할 권리가 있는 인물의 선호도, 학생 형제자매(들) 또는 친척들의 학교 배정 상황 및 통학을 포함한 학교 전학의 영향. 이런 결정은 원래 학교, 위탁 보호 기관, 위탁 보호 부모, 학생 및 생물학적 또는 입양 부모 또는 적절한 경우 학생의 교육관련 결정을 할 권리가 있는 인물의 의견과 함께 교육청과 협력하여 ACS 에서 내리게 됩니다.
- b. 학교를 바꾸는 것이 학생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패밀리 웰컴 센터 이규제큐티브 디렉터 또는 디렉터 또는 75 학군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의 경우 75 학군 담당실에서 해당 학생이 전학 갈 자격이 되는 학교로의 전학을 실시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이 학생이 일반적으로 접수 및 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시할 수 없다 하여도 즉시 학생을 등록시켜야 하며, 이전에 최종적으로 다녔던 학교에 즉시 연락하여 학생의 학업 및 기타 기록을 입수해야 합니다.

- c. 거주지가 변경된 위탁 보호 고등학생이 전학하는 것이 2. a 문단에 정해진 바와 같이 이 학생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될 경우, 통학 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전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위탁 가정에서 더 가까운 학교로 전학 될 수 있습니다.

3. 위탁 보호 학생이 학교에서 교육하는 마지막 학년 전 학년에 현재 등록되어 있으며 뉴욕시가 아닌 지역의 영구 배정되어 이사하였다면, 비-거주자 등록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원래 다니던 학교의 마지막 학년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 학교에 남아 등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4. 진학하는 학년(3-K, pre-K, 유치원, 6 학년 및 9 학년)에 대한 입학전형 절차에 참여하는 위탁 보호 학생:

- a.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입학 우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b. 뉴욕시가 아닌 지역의 위탁 배정지로 옮겨야 할 상황이라, 다른 경우에는 지원할 자격이 없거나 배정 받지 못할 경우라도 위탁 배정 상황에 따라 학교 또는 프로그램에 지역 입학 우선권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D. 가정 또는 병원 교육 및 비 교육청 병원 또는 입원 환경에서 학교로 돌아오는 학생

1. 가정 또는 병원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을 학생은 반드시 가정 또는 병원 교육을 받는 전체 기간 동안 현재 또는 배정 받은 학교의 ATS 에 등록("연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학생은 학년도 또는 한 해 말이 지나서도 가정 또는 병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가정 또는 병원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퇴교처리 되지 않을 것입니다.
2. 뉴욕시에 거주하며 교육청 학교에 아직 입학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전에 퇴교했다가 뉴욕시 학교 학군으로 돌아오는 가정 또는 병원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을 학생은 반드시 존 또는 배정된 학교의 ATS 에 연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비 교육청 병원 또는 입원 환경에서 학교로 돌아오는 학생은 가정에서 새로운 학교로의 전학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75 학군이 추천되어 75 학군 배정 담당실에서 전학 결정을 내리게 될 경우가 아닌 경우 전에 다니던 학교로 돌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E. 보호관찰로부터 돌아온 학생

1. 주, 시, 또는 사설 기관을 포함한 보호관찰 시설로부터 벗어나 뉴욕시 학교 학군으로 돌아오려는 학생은 빠르고 적절한 교육 배정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보호관찰 기관들에는

그룹 홈, 정신 병동, 발달장애 센터, 보호 감호 시설, 법원 명령 시설 및 뉴욕주 아동 및 가정 서비스 담당실, 아동 복지국(ACS) 또는 뉴욕시 교정부에서 후원하는 기숙 치료 센터 등이 있습니다. 학교에 지원, 등록접수 또는 등록하기 전에 보호관찰 기관으로부터의 퇴원 통지문을 제출할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들 학생은 학교에 등록을 위해 부모와 함께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해당 기관에서 학교로 돌아갈 것을 추천하도록 결정하는 즉시, 기관에서는 IEP 를 포함한 관련 학교 기록과 함께 학생의 상태 변경을 설명한 통지문을 학생 등록 담당실 또는 75 학군 담당실로 보내야 합니다.
3. 뉴욕시 학교 학군에서 떠난 후 뉴욕시 내 또는 뉴욕시가 아닌 지역의 보호시설에 있다가 다시 복학하려는 학생들은 본 문서에 언급된 절차에 따라, 전에 다니던 학교로 복학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과 부모 및 보로 담당실 연락 담당과 의논하여 학생 등록 담당실에서는 전에 다니던 학교가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다른 배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75 학군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은 75 학군 배정 담당실에서 학생 및 부모와 논의하여 전에 다니던 학교가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할 경우 다른 배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4. 학교에 지원, 등록접수 또는 등록하기 전에 보호관찰 기관으로부터의 퇴원 통지문을 제출할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F. 정학으로부터 돌아온 학생

1. 정학 처분을 받았던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원하거나 교육감 규정 A-450 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전학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에 교육을 받던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정학 처분을 받았던 5 학년 및 8 학년 학생들 중 다음 가을 학기에 6 학년 및 9 학년 배정을 받았던 학생들은 5 학년 또는 8 학년 졸업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다음 학년도에 배정 받았던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 학교에서는 학생의 "정학" 기록에 따라 학생의 전학이나 등록 허가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VIII. 목록 공지

목록 공지는 아래 수록된 정책에 부합하여 교육청에서 학생을 하나의 학교 등록으로부터 다른 학교로 이전하는 기술적인 과정입니다.

- A. 학교에서 학생을 목록 공지할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은 해당 학교에서 5 학년 전의 최종 학년을 갖고 있다면 해당 학교에서 다음 학년도에 이 학생을 학생의 존 학교로 최종 학년에 목록 공지합니다. 학생이 존 학교가 없거나 또는 가정에서 다른 학교들을 찾아보고 싶다면 패밀리 웰컴 센터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 B. 상기 이유 외 기타 이유로 학생을 목록 공지한 학교는 이 규정을 위반하게 될 것입니다.
 1. 섹션 I.E.3 에 따라, 어떤 특정 학교에 접수 및 입학한 학생은 이 학생이 뉴욕시 다른 존이나 다른 학군으로 이사 간다 하더라도 마지막 학년도까지 해당 학교에 남아있을 권리가 있으며

새로운 존 학교로 목록 공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학생은 오직 섹션 I.E.4 에 명시된 절차에 의해서만 전학될 수 있습니다.

2. 재학중인 학교에서 부적절하게 다른 학교로 목록 공지된 학생은 이전 학교 또는 학생 등록 담당실 또는 75 학군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학생은 75 학군 배정 담당실에서 배정을 제공 받은 학교로 다시 등록 배정될 것입니다.

C. 학생은 학생 담당실에 의해 다음 같은 이유로만 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목록 공지에 의해 전학하게 됩니다:

1. 입학전형 절차를 통해 배정을 제의 받은 학교의 등록을 위해 학생 배정
2. 학년도 말 후 그러나 다음 학년도 시작 전에 학교 배정을 받은 뉴욕시 학교 학군으로 이사 또는 돌아온 학생의 배정
3. 학교의 폐교, 개교 또는 구조조정

IX. 예외조항

교육감 또는 대리인이 뉴욕시 학교 학군 이익에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본 규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예외를 둘 수도 있습니다.

X. 문의처

등록, 입학전형 및 전학 요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십시오: [학생 등록 담당실](#)

전화: 718-935-2009

Fax: 212-374-5568

출결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본 규정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십시오:

안전 및 청소년 발달 담당실 - 필수적인 책임들

전화: 718-374-6095

Fax: 212-374-5751

75 학군 입학 및 전학에 대한 문의는 75 학군으로 직접 연락하십시오.

전화: 212-802-1500

Fax: 212-802-1678

79 학군 입학 및 전학에 대한 문의는 79 학군으로 직접 연락하십시오.

전화: 917-521-3639

Fax: 917-521-3649